

의 안 발 의 서

의 번	안 호	2011 -
--------	--------	--------

수 신 : 거창군의회의회장

2011. 11. .

제 목 :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
발의합니다.

붙 임 :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.

발의자 : 이성복·강철우·백범영·조기원·안철우의원

(찬성자 서명 별첨)

의안번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11. 11. . (제179회)

의결사항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이성복·강철우·백범영·조기원·안철우 의원 공동발의)

발 의 자	이성복·강철우·백범영· 조기원·안철우 의원
발의연월일	2011. 11. .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이성복·강철우·백범영·조기원·안철우 의원 공동발의)

의안번호	제	호
------	---	---

발의연월일 : 2011. 11. .

발 의 자 : 이성복·강철우·백범영·
조기원·안철우 의원

1. 제안이유

-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예고에 관하여 필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예고의 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19조의2).
- 나.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52조 제4항).

3. 관련법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의2 제3항
-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제2항

4. 일부개정규칙안 : 붙임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2(조례안예고)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 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·주요내용·전문 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
-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·법 인 또는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의견제출자”라 한다)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제 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 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-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.
- ⑤ 의장은 당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 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 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 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9조의2(조례안예고) ① 의장은 <u>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·주요내용·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<u>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의견제출자”라 한다)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</p> <p>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<u>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렇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2조(위원회의 심사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<u>⑤ 의장은 당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제52조(위원회의 심사)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</u></p>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1.10.15] [법률 제10827호, 2011. 7.14, 일부개정]

제15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1.7.14]

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, 주요 내용,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

② 조례안예고의 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7.14]